

지배구조내부규범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범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배구조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투자자, 그밖의 금융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,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임원의 전문성 요건,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임원"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2. "이사"란 사내이사,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말한다.
3. "업무집행책임자"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·회장·부회장·사장·부사장·전무·상무·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최고경영자”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제정·변경 및 공시)

- ① 이 규범은 이사회 결의로 제정·변경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주주총회·이사회 결의 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, 단순한 용어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의 제정·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규를 준용한다.

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이사회 구성)

- ①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,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

제5조(이사회 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매년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

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이사의 자격요건)

① 사내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,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② 사외이사는 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제7조(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)

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, 정관 등 회사 내규에서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하며,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5. 내부통제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8.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과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.

④ 이사회는 이사회 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

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의 보호,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.

② 이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(이사의 선임 기준 및 절차)

① 이사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선임한다.

-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, 총 재임기간은 6년 미만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10조(이사의 퇴임 기준 및 절차)

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.

1. 임기의 만료
2. 사임
3.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4.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

제11조 (이사회 의 소집 절차)

-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의장이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사회 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13조 (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)

- ① 회사는 이사회 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평가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, 이사회 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에서 정한다.

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4조 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 1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2. 감사위원회
 3. 리스크관리위원회
 4. 보수위원회

5. 기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,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 (임원후보추천위원회)

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 결의한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16조 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17조 (리스크관리위원회)

-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 - 2.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
 - 3.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 - 4.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
 - 5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제16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8조 (보수위원회)

- ① 보수위원회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 - 2.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

- ②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제16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9조 (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)

-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보고한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평가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1항의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, 평가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

제20조 (임원의 자격요건)

- ① 임원은 제6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.
-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, 준법감시인이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- ③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,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

제21조 (임원의 권한과 책임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사내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대표이사를 보좌한다.
- ③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하며,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(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)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가 아닌 임원은 직무에 따른 권한과 전결권을 가지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관리하며 해당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제22조 (임원의 선임 기준 및 절차)

- ①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규범 제9조를 따른다.
- ② 준법감시인·리스크관리책임자 및 지배구조법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⑤ 그 밖에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

바를 따른다.

제23조 (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)

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.

- 1. 임기의 만료
 - 2. 사임
 - 3.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4.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. 단,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② 임원의 유고시에는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 (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)

① 회사는 신입 임원(그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, 전략, 금융, 재무, 리스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
- 1.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
 - 2. 다른 회사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
-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25조 (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)

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, 보수 및 지급방식에 대한 결정은 보수위원회 또는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

제26조 (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)

- 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.
- ③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7조 (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)

회사의 이사회 주관 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
제28조 (최고경영자의 자격)

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,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,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.

제29조 (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)

- ①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며, 사내,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참조 할 수 있다.
- ②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.

제30조 (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)

회사는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 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.

1.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 개요
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4. 관련 법령등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
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
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7. 그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제31조 (책임경영체제 확립)

-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임 및 퇴임 사유는 제10조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범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 내규의 적용) 이 규범 제14조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직제 반영은 직제규정 제4조 제7항을 적용한다.